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신 성 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36
----------	------

발의년월일 : 2016. 11. 17.
발 의 자 : 신성철 의원 등 10명

1. 제안이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푸드트럭 영업장을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산시에서 필요로 하는 영업장을 조례에 명시

2. 주요내용

-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영업장을 정함(안 제2조)
- 안산시장이 지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3. 제정조례안 : 붙임1

4. 관계법령발췌서 등 : 붙임2

5. 예산수반사항 : 붙임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6.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 예고기간 : 2016. 11. 8. ~ 11. 14.

7. 기타 참고사항 : 집행부 검토의견서

[별임 1]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 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제1항의 지방공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시설 또는 장소
3. 「연안관리법」제1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른 공원구 중 안산갈대습지공원
4. 「어촌·어항법」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 및 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등”라 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소유자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

화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에 대한 창업지원

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 이하인 사람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에 있어 청년 또는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은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 ①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는 다른 무신고업 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요시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요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

제8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안산시의회
입 안 자	시 의 원	신성철 대표발의 (행정 3590)